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위탁중인 서소문별관보다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당 관리면적 : 본관 182평, 별관 307평 (168%) - 평당 청소 비용 : 본관 103천원, 별관 39천원 (38%) ○ 청소업무 이외의 부대지원 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청사내외 환경 정비가 소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년간 반복적인 청소업무수행으로 기동성과 생산성이 떨어짐.
	<p>□推進計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안유지가 필요한 최소구역을 제외한 청소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

구 분	시행시기	위 탁 범 위	감축인원	예산절감 (연 간)
1 단계	'99. 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관, 신관 및 대지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 지 : 3,287평(전체면적 3,728평) - 건 물 : 2,612평(6,010평 중 43%) 	14명	97백만 원
2 단계	2001. 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관 3층 및 지하상황실을 제외한 전지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 지 : 3,287평(전체면적 3,728평) - 건 물 : 4,128평(6,010평 중 68%) 	12명	237백만 원

○ 감축인력 조치

- 1 단계 : 정년퇴직 7명, 소요부서 전출조치 및 위탁업체 재취업 7명
- 2 단계 : 소요부서 전출 및 위탁업체 재취업 12명

○ 용역시행 : '99. 4. 1

廳舍警備 및 行政通信시스템 改善

- 현행 인력에 의한 경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·시행함으로써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청사방호체계를 구축하고
- 노후된 통신시설을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, 종합정보통신 기반을 구축,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함.

□推進方向

- 서소문별관 청사부터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시행결과 분석 후 본관 확대 실시
 - 1 단계 : 서소문별관 청사 (1999. 8)
 - 2 단계 : 본관 청사 중요부서 (2000. 6)
 - 3 단계 : 본관 청사 각 실·과 (2001. 6)
- 통신시설의 불시고장예방 및 정보통신망 통합 수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다양화

□'99年 事業計劃

- 사업기간 : '99. 3. ~ 9.
- 소요예산 : 824백만 원 (전자경비시스템 구축 384, 행정통신시스템 개선 440)

○ 사업내용

<전자경비시스템 구축>

- 서소문별관 청사(1·2동, 후생동) 각 실·과 사무실에 근접식카드리더기(80개소), 열선감지기(26개소) 설치
- 각 층 주요통로, 승강기내부 75개소, 청사외곽 7개소에 CCTV카메라 설치
- 상황실에 중앙통제컴퓨터시스템, 출입관리시스템, 폐쇄회로 TV시스템 각 1식 설치
- 방호인력 감축 (97명 → 85명)

<행정통신시스템 개선>

- 본관 노후 전자교환기 교체
- 본관↔서소문별관간 자체 통신망 구축
 -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'99 구축예정인 광통신망 공동사용

○ 개선시행 : '99. 10. 1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
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검 토 의 견

1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공포(98.2.24)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

<p>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, 가입범위, 협의회구 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98년 12월 31일 공포된 같은법시행령과 정부(행정자치부)에서 통보된 준칙안을 근 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재정하게 된 것임. <p>2. 추진 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법 제33조는 일반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 정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권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, ○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 조에서는 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」 에게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. 따라서 노 동운동 기타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현재까지는 절대다수의 공무원에게 단 결권조차 허용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, ○ '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에 따라 관계법률이 제정되었음. <p>3.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협의 회를 운영함으로써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향상, 고충처리 등을 공무원 · 개인의사가 아닌 단체의사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, ○ 하급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인 의사전 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상하간의 이해촉진 으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, 나아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행정을 개선하며,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는 견제작용을 함으로써 부정부패방지와 공직 윤리도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됨. <p>4. 주요내용별 검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설립목적, 설립기관의 범위,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, 설립절차, 협의 회규정, 가입·탈퇴 및 제명, 협의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 었는데, 검토결과 내용상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별 문제점은 없으며,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아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. ○ 다만, 보완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, 	<p>1) 설립단위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을 기관장으 로 하고, 5급이하 기관은 다른 5급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통합한다고 규정하였는 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 용한 것임. - 이렇게 할 경우 99년 1월 1일 현재 협의 회를 구성할 수 있는 4급이상 기관은 56 개이고 5급이하는 15개에 이르고 있어 5 급이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 지 않을까 우려가 됨. · 4급이상기관 : 본청 1, 직속기관 3, 시의 회 1, 사업소 51(기관별현 황별첨) <p>2)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 제11조의 「합의사항이행」에는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는 데, 상호 불이행에 따른 대책(중재)이 필요 함.
---	---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
립·운영에 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
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①공무원직장협의회
의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
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
한다)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설립기
관”이라 한다)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
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
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
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
우
2.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
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
원의 수,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
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
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
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